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3. .
제 안 자 : 성평등가족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445	김남희의원	2025.11.20.	○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2. 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3.17.)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48	김한규의원	2025.12.1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39	정춘생의원	2025.12.17.	

나.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17.)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2026. 3.24.)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10조제4항제9호의2 및 제17호 신설).

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

법률 제 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에 제9호의2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15호 및 제16호”를 “제4항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로 한다.

9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17.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11조의 제목 중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

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제9호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 9. (생 략) <신 설> 10. ~ 16. (생 략) <신 설> ⑤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⑦ (생 략)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10. ~ 16. (현행과 같음) 17.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 ⑥·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제11조(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단서 신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